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부서)의 장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8-48호
2018. 6. 11.(월)

차 례

입법예고(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18-502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18-503호) ··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8-504호) ·····13

공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감사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8-50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1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일부 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자치법규 정비대상 중에 법령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사항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함(안 제46조제2항).

나. 금전채권 소멸시효 인용법규를「지방재정법」으로 수정함(안 제77조제4항).

다. 제명 띄어쓰기, 조문 오탈자 및 회계관계 서류 제출관련 제명을 수정함(안 제38조, 제60조제1항 및 제138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7. 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06-7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총무과(전화 : 042-608-6541, FAX : 042-608-3821, E-mail : jh6406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총무과 담당자 전해동(전화 : 042-608-65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증권에 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제1항 중 “처”를 “처리”로 한다.

제77조제4항 중 “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138조 중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을 “「계산증명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 (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38조 (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 「증권에의한 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
제46조 (지방세 법규적용) ① (생 략)	제46조 (지방세 법규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지출원이 제59조에 따라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서식)로 통지하거나 전자적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0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처

	리----------.
②·③ (생 략)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 ③ (생 략) ④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따른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구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제138조 (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방재정법」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38조 (준용규정) ----------「계산증명규칙」----------.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8-50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1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에서「지방회계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지방회계법」이 개정됨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안 제1조 및 제7조1항).

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에 대해 정한 인용 조문을 “「지방재정법」”에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수정

함(안 제7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7. 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06-7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총무과(전화 : 042-608-6541, FAX : 042-608-3821, E-mail : jh6406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총무과 담당자 전해동(전화 : 042-608-65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 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제1호에 규정된 자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회사무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동장(이하 "구청장 등" 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2조(정의) ----------이란 ---------- 사람을 ----. 1. (현행과 같음) 2. ----------사람----------사람
제3조(재정보증의 설정방법 등) ①・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 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3조(재정보증의 설정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재정보증금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설정하여야 할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재정보증금액) 제2조에 따른 ----------.
2. 제1호에 규정된 자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3천만원	2. ---------- 사람----------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금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구청장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에 따른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8-50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자치법규 정비대상 중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법령 제명을 띄어쓰기함(안 제4조).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에 맞게 수정함(안 제13조).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우선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라는 조문을 삭제함(안 제19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전화 : 042-608-5223, FAX : 042-608-3844, E-Mail : hyswou77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 담당자 황용선(전화 : 042-608-52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25-1호 서식”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구성) ① ~ ③ (생 략) 1. ~ 2. (생 략)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
제13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25-1호서식----- ----------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준용)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부담금, 과태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관 계 법 령]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1. 제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5.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5.22., 2016.12.2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5.22., 2013.8.6.>

[전문개정 2011.5.30.]

「지방세징수법」

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절 독촉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